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3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0.
3. 회부연월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이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의 청구도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가 민원업무도 담당하게 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보공개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

또한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

를 이송받은 공공기관은 기 접수한 청구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를 납부하지 아니
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
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제3
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단서 신설, 제11조제5항제2호,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2제2항·제3항 신설, 제1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 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 ----- ----- ----- ----- ----- ----- <u>. 다만,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동일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⑤ ----- ----- ----- ----- ----- ----- <u>.</u>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현행	개정안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신 설>	----- ----- ----- ----- ----- ----- ----- ----- ----- ----- ① 하고, 그 이후 접수되는 반복 청구에 대하여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 이미 접수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②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	<u>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u> <u>③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u> <u>④ (현행 제2항과 같음)</u>

현행	개정안
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17조(비용 부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후 그 청구를 2회 이상 취하하거나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신설>	⑤ 제4항의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 중 하나임.¹⁾²⁾

우리나라는 1996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을 제정³⁾한 이후 정보공개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⁴⁾ 여러 차례의 법률 개정을 거쳐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를 지원⁵⁾하고, 주요

1) 윤광석,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통권 제145호, 2020, p.90.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법률 제5242호, 1996.12.31. 제정, 1998.1.1. 시행

4) 윤광석,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통권 제145호, 2020, p.90.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정보를 사전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원문을 공개⁶⁾하는 등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선제적·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왔음.⁷⁾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요 연혁]

- 1996.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 2004.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행정정보 공표 등 전면개정)
- 2006.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 세부기준 수립·공개)
- 2008.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 대통령 소속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 2013.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원문정보공개 제도 도입 등)
- 2016.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정보공개청구조서 서명 허용: 기명날인 → 기명날인 또는 서명)
- 2020.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정보공개 위원회 소속 변경(행정안전부장관 소속 → 국무총리 소속) 등))
- 2023.0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 국무총리 소속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자료: 202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8) 202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행정안전부, p.4. 참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발전시켜 왔음에도 전문가들은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 행태와 일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 행태를 제시⁹⁾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중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 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량·과다·반복 청구, 경제적·무형적 사익 추구, 보복성·민원성 청구, 청구 후 미수령 및 취하 등을 구체적인 오남용 행태로 들고 있으며,¹⁰⁾

[정보공개청구 오남용 행태]

부문	요인(원인)	변수(오남용 형태)
법·제도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적 요건	대량청구
		과다청구
		반복청구
		범위과도
		기간과도
		중복청구
		무관청구

9) 윤광석,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통권 제145호, 2020, p.90.참고

10) 소극적 정보공개 행태와 관련해서는 임의적·고의적 부존재 처리, 정보 미생산 또는 미등록, 비공개 근거 조항 부적절, 허위통보, 중요내용 누락, 포괄적 회피, 고의적 부분 공개, 근거제시 미흡, 분리공개 미이행, 고의적 공개회피·공개지체·정보왜곡, 처리기한 경과, 임의적 종결처리, 이송의무 불이행, 취하중용·회유, 인터넷 사이트 안내조치 등을 들고 있음.

부문	요인(원인)	변수(오남용 형태)
	오남용 관련 조항	경제적 사익추구
		무형적 사익추구
		보복성 청구
		민원청 청구
		위협/비방
	불복절차 관련 조항	불복구제절차 남용
운영	수수료 규정	청구 후 미수령
		청구 후 취하
홍보	제도 이해	단순 질의
		제도 오해

※자료: 윤광석,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행태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행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포커스 통권 제145호

행정안전부 또한 과다·대량 청구, 경제적·무형적 사익 추구, 청구 내용 불분명, 욕설·비방 등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 행태를 보이는 일부 청구인들로 인하여 정상적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지연, 정보공개 질 저하 등 현상이 나타나고,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들의 고충이 심화되며 행정력 낭비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여, 향후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정보공개제도 발전 방향 중 하나로 서술하고 있음.¹¹⁾¹²⁾

11) 202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행정안전부, p.16.-18.(정보공개제도 개요- 6.발전방향) 참고

12)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에 대하여 다음 사례들을 예시하고 있음.

- 과다·대량 정보공개청구 등
- 시장 업무추진비(지출결의서, 품의서, 공문), 도로관리대장, 2년간 생활불편 내역, 5년간 불법간판 적발 현황, 각종 출제 현황, 전용차량 내역, 10년치 인허가 관련 서류 등 57개 항목 9건 청구 → 3개월 동안 자료 복사 등을 하였으나 미수령

[연도별 다수 정보공개 청구(상위 10명) 관련 현황]

□ 2023년

(단위: 건, %)

순위	청구인	정보공개청구		종결 처리		정보부존재 처리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이 ○ ○	131,625	7.5	39,568	30.0	56,765	43.1
2	김 ○ ○	38,660	2.2	7,861	20.3	21,675	56.0
3	오 ○ ○	12,471	0.7	2,485	19.9	2,179	17.4
4	박 ○ ○	10,884	0.6	122	1.1	4,311	39.6
5	조 ○ ○	10,263	0.6	1,190	11.5	6,319	61.5
6	스 ○ ○	9,688	0.6	1,662	17.1	5,946	61.3
7	주 ○ ○	9,012	0.5	41	0.4	158	1.7
8	윤 ○ ○	8,635	0.5	8,626	99.8	4	0.04
9	이 ○ ○	8,421	0.5	300	3.5	1,257	14.9
10	이 ○ ○	7,880	0.5	4,065	51.5	1,862	23.6
계		247,566	13.4	65,920	26.6	100,476	40.5

※자료: 행정안전부

*주- 정보공개청구 비율은 연 전체 청구 건수(2023년: 1,842,358건)에 대한 비율
종결 처리 및 정보부존재 처리 비율은 각 청구인의 청구건수에 대한 비율

- 3년간 공무원들의 개인별 출장 내용, 군수·부군수 및 실·과·소장들의 접대비부터 각종 사업을 위해 소요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 청구 → A4용지 2천장이 넘는 분량으로 보름 넘게 소요, 민원업무 처리 지연으로 다른 군민들에 피해
- 전국적으로 전 직원의 초과근무, 출장내역, 온나라 문서사용내역 등 대량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구 → 비공개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검찰 고발 등 언급

□ 경제적·무형적 이익 추구

- 수감자인 청구자가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
→ 대다수의 소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승소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배분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수감 중 변론기일 출정으로 강제노역을 회피
- 본인의 논문 작성을 위해 다양한 서식들을 보내 채워달라고 청구

□ 청구내용 불분명, 욕설·비방 등

-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기재하여 수년 간 지속적으로 청구
→ 종결 또는 부존재결정 시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은 삼권분립과 화폐발행권에 관한 불만, 예수님 왕국에 대한 내용 기재
→ 자신의 의견에 동조 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등의 내용 반복 청구

□ 2022년

(단위: 건, %)

순위	청구인	정보공개청구		종결 처리		정보부존재 처리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이 ○ ○	285,415	15.8	143,370	50.2	88,854	31.1
2	이 ○ ○	213,695	11.9	73,682	34.5	89,379	41.8
3	공 ○ ○	29,206	1.6	4,155	14.2	3,121	10.7
4	정 ○ ○	11,057	0.6	4,152	37.6	2,678	24.2
5	조 ○ ○	10,897	0.6	1,092	10.0	3,901	35.8
6	이 ○ ○	7,667	0.4	304	4.0	1,394	18.2
7	이 ○ ○	6,876	0.4	1,020	14.8	2,411	35.1
8	강 ○ ○	5,598	0.3	387	6.9	1,963	35.1
9	최 ○ ○	4,675	0.3	372	8.0	1,128	24.1
10	김 ○ ○	4,508	0.3	3,768	83.6	73	1.6
계		579,594	32.2	232,302	40.1	194,902	33.6

※자료: 행정안전부

*주- 정보공개청구 비율은 연 전체 청구 건수(2022년: 1,802,099건)에 대한 비율
종결 처리 및 정보부존재 처리 비율은 각 청구인의 청구건수에 대한 비율

□ 2021년

(단위: 건, %)

순위	청구인	정보공개청구		종결 처리		정보부존재 처리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이 ○ ○	135,022	8.6	64,177	47.5	37,336	27.7
2	이 ○ ○	109,717	7.0	44,758	40.8	46,632	42.5
3	강 ○ ○	24,137	1.5	9,046	37.5	11,665	48.3
4	김 ○ ○	21,330	1.4	9,904	46.4	9,506	44.6
5	윤 ○ ○	19,313	1.2	14,789	76.6	3,048	15.8
6	양 ○ ○	18,669	1.2	13,590	72.8	4,093	21.9
7	스 ○ ○	10,875	0.7	2,980	27.4	6,631	61.0
8	조 ○ ○	7,410	0.5	1,187	16.0	4,779	64.5
9	이 ○ ○	7,048	0.5	317	4.5	701	10.0
10	강 ○ ○	6,989	0.5	1,852	26.5	977	14.0
계		360,510	23.1	162,600	45.1	125,368	34.8

※자료: 행정안전부

*주- 정보공개청구 비율은 2021년 전체 건수(정보공개청구: 1,564,665건)에 대한 비율
종결 처리 및 정보부존재 처리 비율은 각 청구인의 청구건수에 대한 비율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청구에 대하여 종결 처리 사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기관에 대한 중복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청구를 이송받은 기관에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정보 공개 청구가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한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권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이며,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 방지 방안들은 다음과 같음.

1.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워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정보공개에 관한 진정·질의 등으로 한정(안 제11조제5항제2호)

현행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은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거나, 청구 내용이 진정·질의 등에 해당하여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있음.¹³⁾

정보공개 청구 중 진정·질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한 현황을 살펴 보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119건→3,484건→9,330건→7,377건→18,318건→37,840건→39,420건)이며,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④ (생략)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2021년 및 2022년에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해당 처리 건수가 10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및 진정·질의로 처리 현황(2017~2023년)]

(단위: 건,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정보 공개 청구	연간 건수	764,411	981,640	1,352,248	1,286,108	1,564,185	1,802,099	1,842,358
	전년대비 증감 (비율)	-	217,229	370,608	-66,140	278,077	237,914	40,259
			(28.4)	(37.8)	(-4.9)	(21.6)	(15.2)	(2.2)
진정 · 질의 처리	연간 건수	2,119	3,484	9,330	7,377	18,318	37,840	39,420
	전년대비 증감 (비율)	-	1,365	5,846	1,953	10,941	19,522	1,580
		-	(64.4)	(168.7)	(-20.9)	(148.3)	(106.6)	(4.2)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민원성 청구의 증가로 인해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들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타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를 위해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진정·질의 등’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¹⁴⁾’

14) ‘진정’을 ‘건의’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 보면, ‘진정’은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함’, ‘건의’는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을 내놓음’이란 의미이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등을 정의하고 있으나 ‘진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진정의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민원의 성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진정’과 ‘건의’의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진정(陳情):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함.(사용례: 진정을 내다. 진정을 드리다.)

질의 등'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건의·질의 등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하고, 정보공개와 무관한 민원성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미처리 사유 등을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현행 및 개정안 제11조제5항 비교]

현 행	개 정 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u>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음</u> .	----- ----- ----- ----- -----.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1. (현행과 같음)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u>진정·질의 등</u> <u>으로</u>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등으로</u>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 기 어려운 경우

·건의(建議):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을 내놓음. 또는 그 의견이나 희망(사용례: 건의를 받아들이다. 건의를 채택하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8. (생략)

15)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시행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되지 않은 건의·질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미처리 사유 및 일반 민원 신청(국민신문고 등) 방법 등을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정보공개 청구인지 민원인지에 따라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구별되기보다는 특정 업무의 담당자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민원 처리를 모두 담당하는 경우들이 있음. 정보공개와 관련되지 않은 민원성 청구를 처리하지 않고 미처리 사유 및 민원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민원으로 신청한 후에는 공공기관의 동일 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과 같이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한정하는 것이 공공기관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현행 규정은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 측면에서는 민원으로 신청할 사항을 정보공개로 잘못 청구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해당 청구를 반려하거나 종결 처리하지 않고 「민원처리법」까지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음에 따라, 국민이 동일한 사항을 다시 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불편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날 정도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일부 청구인들의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에 비해, 민원으로 신청할 사항을 정보공개 청구로 잘못 제기하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의

오남용보다는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 방법 선택상의 오류에 가까운 측면도 있어 보이는바,¹⁶⁾

안 제11조제5항제2호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담당자의 업무부담 감소 등 효과와 현행 규정에 따른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 등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반복 청구에 대한 종결 처리 통지 생략(안 제11조의2제1항), 반복·중복 청구 등 종결 처리 사유 확대 등(안 제11조의2제2·3항 신설)

현행 「정보공개법」 제11조의2는 반복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인에게 종결 처리한 사실을 알리거나(제1항) 해당 정보의 소재 등을 안내(제2항)하도록 하고 있음.¹⁷⁾

개정안은 반복 청구(동일 기관)가 계속되는 경우 종결 처리 사실 통지를

16)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에 대하여, 반복청구에 대한 종결 처리 사실 통지 생략(안 제11조의2제1항), 타 기관에서 이송받은 중복 청구의 종결 처리(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의 대량 또는 반복적 청구의 종결처리(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항), 중복 청구(여러 기관) 등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항), 또한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의 대량·반복적 청구에는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심의회¹⁸⁾(이하 “심의회”라 함)의 심의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항).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현행 제1항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결정의 통지를 하였거나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항**은 ‘종결 처리 통지 후에도 같은 청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 후 해당 사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안 제2항은 청구인이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중복하여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송받은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다수 기관에 중복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11조제4항**은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이송받을 기관에서 이미 동일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⑥ (생략)

개정안 제1항 및 제2항과 유사한 입법례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해 2회 이상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¹⁹⁾ 2개 이상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송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²⁰⁾ 「청원법」 제16조²¹⁾에서도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3항은 정보공개 청구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의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 여부에 정보공개 담당자 또는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²²⁾하는 심의회의 판단을

19) 종결 처리 통지와 관련해서는 최초 종결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종결 처리 사실을 통지하고, 그 이후 계속되는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통지를 생략하고 있음(행정안전부 지침).

2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 「청원법」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 제11조의2 비교]

개정조항	현행	개정안
안 제11조의2 제1항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u>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함.</u> ※종결 처리 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u>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u> 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u>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u>를 하는 경우	----- ----- ----- -----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고 그 이후 접수되는 반복 청구에 대하여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종결 처리 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2. (현행과 같음)
안 제11조의2 제2항	<u><신 설></u>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는 <u>이송받은 청구를 종결 처리</u>할 수 있음.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함.
(안 제11조 제4항)	<u>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단서 신설></u>	----- ----- ----- ----- ----- ----- ----- 다만,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동일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송하지 않을 수 있음.

개정조항	현행	개정안
안 제11조의2 제3항	<신설>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함.
안 제11조의2 제4항	-현행 제2항-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제4항으로 이동- (현행 제2항과 같음)
	1.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민원처리법」과 「청원법」은 민원이나 청원(이하 “민원등”이라 함)이 반복 또는 중복(또는 이중)되는 경우 해당 민원등이 같거나 동일한 내용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해당 민원등의 성격, 종전 민원등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등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²³⁾

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② (생략)

개정안에서는 제1항의 반복 청구에 대해서만 이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신설하려는 안 제2항(중복 청구 종결 처리) 및 제3항(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의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 종결 처리)과 관련해서도 제1항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의 입법예고(2024.9.11.~9.21.)에서는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 여부 판단에 대한 주관적 해석 및 자의적 판단 가능성, 정보공개 청구의 임의적 종결로 인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 공개여부가 변경되는 등 반복 청구를 인정할 필요성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된 주요 의견의 내용을 참고(p.29~31)로 첨부함.

3. 일정 요건 해당 시 정보 공개 및 우송 등 비용 미리 납부(안 제17조제4항)

「정보공개법」 제17조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관련 비용을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고 수수료는 행정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청원법」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② (생략)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²⁴⁾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수수료 발생 및 미납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 결정 통지 후 청구를 취하하거나 통지한 공개일로 부터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아 공개 보류 또는 종결 처리²⁵⁾된 비용 미납 건수가 연간 약 40,000~64,000여 건(연간 수수료 발생 청구 건수의 23.7~27.6%)이며, 2020년 이후 해당 건수가 증가하고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⑥ (생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수 수 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주: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를 예시함. 그 외 필름·테이프 등,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전자파일에 대하여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음.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② 공공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있는 추세임.

[연도별 수수료 발생 및 미납 등 건수(2020~2023년)]

(단위: 건, %)

구분	연간 청구	수수료 발생(A)	수수료 미납 건수			
			결정통지 후 청구 취하	미납으로 보류*	10일 초과 종결**	합계(B) (비율: B/A)
2023년	1,842,358	269,581	115	32,800	32,059	64,974 (24.1)
2022년	1,802,099	221,117	71	27,373	26,76	54,205 (24.5)
2021년	1,564,665	187,345	32	22,489	21,908	44,429 (23.7)
2020년	1,286,108	144,949	15	20,496	19,545	40,056 (27.6)

※자료: 행정안전부

*주: ~~미납으로 보류~~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 지날 때까지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중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보류

10일 초과 종결-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 지날 때까지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중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

정보공개 청구 후 답변자료를 수령하지 않는 행위는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 업무담당자의 행정력 낭비와 타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개정안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2회 이상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 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정보공개 청구권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²⁶⁾

26) 유사 입법례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자의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 및 개정안 제17조제4항 비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후 그 청구를 2회 이상 취하하거나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신 설>	⑤ 제4항의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개정안은 안 제5항에서 안 제4항(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제3항에서도 제1항에 따른 비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①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의 위임을 규정²⁷⁾하고 있는바, 하위 법령에 대한 위임규정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하나의 항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9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9.18. 채**】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량 청구'를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가 임의로 종결될 수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큼니다.

이미 현행 제도로도 악성 민원 성격의 청구는 효과적으로 저지 가능합니다. 상위 10명의 청구자(3개년 평균 전체 청구의 23.5% 차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을 제한해도 다른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하기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시스템 이용약관 개정으로 해결한 선례가 있습니다.

판례상으로도 악성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 오남용으로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두934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관시사항】

-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하는지(소극)
- [2] 교도소에 복역 중인 甲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6513>)

'반복 청구'의 경우에도, 일부 정보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개 여부가 변경되거나 공개 대상 정보가 갱신되어 재차 공개를 청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법률에서도 3회 이상 반복 청구의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 또는 반복 청구' 관련 조항은 불필요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4.9.19. 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양부남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안번호 2203835) 제11조의2 ③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발의안에서는 비록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법안(행정안전부공고 제 2024-1114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한 기준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의 문제

- 청구인의 의도나 목적을 판단해야 하는 주관적 해석을 요하고 있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당한 정보공개 요청마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자칫 정보공개담당자의 업무량 과다 문제를 '괴롭힐 목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괴롭힐 목적'을 "폭언, 욕설, 비방 등 정보공개담당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의 제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민원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69호) 제4조 제1항제3호 라목을 참고했습니다.
- 명확한 기준 없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통해 종결 처리할 경우 오히려 심의회 개최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될 것입니다.

2.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불필요성

- 현행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이미 반복 청구에 대한 종결 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 ② (생략)

- 청구 내용의 반복이 아닌, 청구인의 반복적 청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칫 특정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228 판결, 특정청구인의 청구를 일정 기간 일률적 비공개한 것은 위법)

3. "대량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모호성

- 현행법 제13조 제3항에서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많을 경우 일정기간 나눠서 공개하는 규정이 이미 존재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⑤ (생략)

- '대량'의 기준이 불분명하며,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성격에 따라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반대의견은 대표 및 공동발의 의원에게 9월 10일 발송한 공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회입법예고시스템(<https://pal.assembly.go.kr/>)

*주- 작성자, 작성기관, 작성내용을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된 의견을 기재하였으며, 편의를 위해 판례와 법률 규정을 추가함.